

당직근무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 휴일 또는 집무시간 외의 문서처리와 교내 전반의 단속 및 화재 기타의 경계를 위하여 당직을 둔다.

제3조 (당직구분) ① 당직은 이를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과 같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 및 변경) ① 직원은 사무처장의 명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재팀장은 매월 당직조를 편성하여 당직 3일전까지 이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전항의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사무직원 또는 기술직원과 노무직원이 한 조가 되어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사무직원 또는 기술직원이 정책임자가 되고 노무직원이 전기, 수도 및 난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자가 된다.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시설관재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등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시설관재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팀장급 이상의 직원 중 55세 이상인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전일부터 귀임 다음날까지의 기간

2. 신규채용된 자는 임명일로부터 1개월간

3. 기타 특히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 기간

제7조 (당직의 일반업무) ① 당직자는 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경비 수위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감독

② 당직근무중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친전 또는 비밀의 표시가 있는 문서는 이를 개봉하지 아니하고 즉시 총장에게 송부한다.

2. 전호 이외의 문서는 이를 개봉하여 당직일지에 문서건명과 번호를 기입 보관하였다가 이를 문서 담당 주무과에 인계한다. 다만 긴급한 문서는 전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교내를 순찰 감시하여야 하며, 만약 비상이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에 따른 다음 긴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설관재팀장, 사무처

장, 총장의 순위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구내의 화재경보와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과 경계의 실시
3. 비상 지출함 기타 중요물품 등의 반출 대피

② 피한 기타 난동자 등의 침입이나 침입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제9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근무 규정집
3. 교직원 주소록 및 비상소집 연락명
4. 교내 평면도 각종 건물 평면도 및 소화시설 현황표
5. 전지등 조명기구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0조 (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서식)에 기재하고 시설관재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지사항과 당직의 감시)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처 이탈
2. 음주 기타 도박행위

② 사무처장은 당직근무 태도를 수시로 감시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감시로 본 규정에 위반된 당직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과에서 팀명 변경사항 개정<2009 제26차 교무위원회>)